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즉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에 대하여

가.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나.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양 당사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그러한 공급이 유럽연합에 설립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설립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을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급은 금융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내 설립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가 그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해 지속된다. 유럽연합 당사자는 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에 협의를 갖자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환영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¹⁾

이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유럽연합 대표단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의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우편개혁계획의 다음의 측면에 유럽연합 대표단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신서의 범위는 그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더 명확히 될 것이며, 신서 독점에 대한 예외는 중량, 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확대될 것이다.

나.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국내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그 밖의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편법시행령* 제3조를 또한 개정하여, 이 협정의 발효 시까지 모든 국제서류 특급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 서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우편 서비스 독점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이 양해는 비구속적이며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대표단 간에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인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자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7.22조(투명성 및 비밀정보), 제7.23조(국내 규제) 및 제7.36조(통신분쟁의 해결)와 합치하는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용도지역지구제 ·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내에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자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여 규제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비차별적이며 비수량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한, 이러한 규제가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양해를 공유한다.

위의 공동의 양해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다음의 법률에서 유지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양 당사자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